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 제 정 2009. 3.
- 개 정 2010. 6.
- 개 정 2012. 3.
- 개 정 2012. 7.
- 개 정 2012. 12.
- 개 정 2015. 2.
- 개 정 2016. 2.
- 개 정 2017. 8.
- 개 정 2018. 2.
- 개 정 2018.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졸업사정 대상의 선정)(신설2016.02.01.)①교무처 및 학부(과)에서는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졸업사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한다.

②제1항에서 말한 졸업사정 대상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1. 졸업사정대상자 확정일 현재 4학년 재학생으로 학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충족 자.
- 2. 규정 제21조 제4호에 따른 수료자 중 졸업사정대상자 확정일 현재 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자.

③제2항 제1호에서 말한 수업연한 충족자라 함은 1·2학기 과정 총 7개 학기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과정 총 6개 학기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한자를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9조에 따른 조기졸업 신청자는 조기졸업관련 규정에 따라 그 대상자를 정한다.

⑤제3항 규정의 적용은 2016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졸업종합시험

제2조 (시험관리총괄) 졸업종합시험은 대학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졸업종합시험의 기본계획 수립
- 2. 평가기준, 방법, 결과처리 등 주요사항의 결정

제3조 (학부별 시험관리) 졸업종합시험의 학부별 시험 관리는 학부단위 평가위원이 담당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조 (소위원회) 총장은 본 대학 교직원 및 시간강사 중에서 출제위원, 시험감독위원,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여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실시시기) ①기본계획은 전년도 5월 및 11월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학사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시험은 연 2회(5월과 11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횟수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격 및 제한) ①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2.7.1)
2. 전공교과목 : 졸업과제연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신청하고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졸업과제연구를 개설하지 않는 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교과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 ② <삭제 2012.7.1>
- ③졸업종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다음 1회에 한하여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④ 학·석사연계과정과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절차) ①학부장은 졸업종합시험 응시자 명단을 시험실시일 20일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 수료자로서 졸업종합시험에 재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위 기간에 해당학부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으로 처음 응시하는 자에게는 수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재 응시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과목) ①졸업종합시험의 과목은 전공교과목으로 한다.

②전공과목의 범위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시험, 논문, 실험, 실습, 실기, 자격증취득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6.02.01.)

③학부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사1급 이상 등)을 갖춘 자는 전공교과목의 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 2 (World Student 인증제) ①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는 다음 각 호1에 해당 되는 경우 교양과목 합격으로 인정한다.

1. 토익 550점 이상 취득자(단, 간호학과는 650점, 철도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외식조리학과는 600점으로 한다)
2. JLPT2급 이상 취득자
3. HSK7급 이상 취득자
4. 기타별도 지침에 의하여 위 각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

②World Student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별도의 이수과정을 거쳐 이수로 인정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입학생 중 2+2복수학위 취득자 및 전공과목 수업 대부분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소속 학생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16.02.01.)

④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는 교양과목 합격 기준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자로 한다.(신설2016.02.01.)

제9조 (시험점수 배점) 졸업종합시험의 전공교과목의 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제10조 (교양교과목의 출제형식 및 수준) 삭제 (2012.7.1)

제11조 (합격기준) ① 삭제 (2012.7.1)

②전공교과목은 졸업과제연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졸업논문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합격은 계속 유효하다.

④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교과별 합격인정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교과 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학부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졸업논문 등의 계획서 제출) ① 졸업종합시험 전공교과목을 졸업논문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졸업과제연구를 수강하는 학기 초에 소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 등의 계획과 수행은 졸업과제연구와 연계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13조 (졸업논문 등의 지도교수 선정) 졸업논문 등의 지도교수는 학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접수한 학기 초에 위촉하며, 동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등의 전 과정을 지도한다.

제14조 (졸업논문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졸업논문 등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서로 논문작성법에 의거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학부에 제출한다. 다만, 실기발표의 경우에는 해당 작품과 작품을 제작한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학부에서는 졸업논문 등의 제출 전에 발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발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졸업논문 등은 최종학기 기준으로 11월말(전기), 5월말(후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졸업논문 등의 심사위원회 구성) 졸업논문 등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임 및 외래교수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16조 (졸업논문 등의 심사와 평가) 졸업논문 등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학부에서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졸업종합시험 등의 관리수당) 졸업종합시험 등의 시험 관리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험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사항)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성적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졸업 및 학위수여

제19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 제29조에 의하며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

하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솔브릿지경영학부 및 복수학위과정 이수자 등은 교육과정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개정 2016.02.01., 개정 2017.08.28.)

④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필수 이수학점은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개정 2016.02.0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2.08., 개정 2018.05.)

⑤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설학과(전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 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과목을 주 전공학점(필수 또는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02.08.)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29조제3항의 근거에 따라 2학년이상 편입생의 경우 교육과정이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8.06.29.)

1. 2학년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05학점 으로 한다.
2. 3학년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70학점 으로 한다.
3. 4학년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과목의 이수구분과 상관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1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신설 2018.06.29.)

1.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특별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2. 인턴십 운영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인턴십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3.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
4.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및 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

⑧제7항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이수인정의 범위는 취득 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에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 내로 한다.(신설 2018.06.29.)

제19조의2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점 인정)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5항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2.01.)

②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또는 학과에서는 특별교육과정 설치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17.08.28.)

제1호 내지 제4호 삭제(2017.08.28.)

③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2의 특별교육과정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28.)

④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별지2의 신청서에 명기된 특별과정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필수, 전공필수,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의 학점으로 이수 인정하며, 이를 졸업사정에 반영한다. 다만, 성적표기 과목명은 이수한 과정의 과정명 또는 이수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표기한다.(개정 2015.03.02.)

⑤과정별 이수자가 이수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기한 과정에 대한 학점은 F로 처리하며, 졸업학

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제2항에 의하여 특별과정을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제4항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이수 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5.03.02.)(개정2016.02.01.)

1. 일반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 학점의 범위는 해당학생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상의 당해 학년 학기에 편성된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한다.
2.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 다만, 그 인정 학년 및 학기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로 하되, 여름·겨울학기는 제외 한다.
3.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2015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며, 동 학년·학기로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제20조 (교과목 이수 및 교육과정) ① 삭제(2012.7.1.)

②편입학생에게 지정된 선이수 기초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의 적용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한다.

제20조의2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의무이수) ①학칙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개정 2016.02.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군사교육단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자의 경우에는 학칙 제 3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활동을 중도 포기 또는 탈락한 경우 졸업 전까지 학칙에 따라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3.)(개정2016.02.01.)

제21조 (학년별 수료) ①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년별 수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학칙 제41조의2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2016.02.01.)

1. 제1학년 : 취득학점 38학점 이상 76학점 이하
2. 제2학년 : 취득학점 77학점 이상 109학점 이하
3. 제3학년 : 취득학점 110학점 이상 141학점 이하(개정 2017.08.28.)
4. 제4학년 : 취득학점 142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개정 2015.02.23.)(개정2016.02.01.)

②(삭제2016.02.01.)

③(삭제2016.02.01.)

제22조 (학위수여) ①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50 이상인 자에게 졸업증서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16.02.01.)

②학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그 과정명을 주전공과 함께 학위증에 표기하여 수여한다.(개정2016.02.01.)

③학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다전공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외 별도의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02.01.)

제23조 (기타사항) 졸업 및 수료와 학위수여에 관하여 학칙과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본 규정 시행에 따른 재학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졸업종합(교양)시험 응시자가 있을 경우 2013학년도까지는 기존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졸업의 자격으로 활용하며, 2014학년도 이후부터는 World Student인증제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2015년 8월 이전에 졸업하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 또는 ‘졸업시기별 이수학점표(경과조치)’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③본 규정 시행 전에 졸업유예 중인 학생은 기존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료기준) ①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15학년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38학점 이상 76학점 이하 취득 자

나. 2학년: 77학점 이상 109학점 이하 취득 자

다. 3학년: 110학점 이상 147학점 이하 취득 자(개정 2017.08.28.)

라. 4학년: 취득학점 148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2.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38학점 이상 76학점 이하 취득 자

나. 2학년: 77학점 이상 114학점 이하 취득 자

다. 3학년: 115학점 이상 153학점 이하 취득 자(개정 2017.08.28.)

라. 4학년: 취득학점 154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3.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취득 자

나. 2학년: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 자

다. 3학년: 105학점 이상 139학점 이하 취득 자(개정 2017.08.28.)

라. 4학년: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인 자로 필수이수학점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제3조 (이수학점 기준) ①입학 년도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1」의 경과조치로 한다.(개정 2017.08.28.)(개정 2018.06.29)

1. 삭제(개정 2018.06.29)

2. 삭제(개정 2018.06.29)

3. 삭제(개정 2018.06.29)

②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필수학점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양선택 이수 여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2항의 사항은 2015년 8월 이전 졸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신설 2018.06.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2018.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11.13. ,2016.02.0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2.08., 2018.06.29).

1.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표

<표 1. 일반학과(개정2018.06.29.)>

구분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신입학 일반학과		22	37	27	75
편입학	2학년 편입	-	12	16	50
	3학년 편입	-	-	6	42
	4학년 편입	-	-	-	21

※단,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이전 4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29조1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 2.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적용자>

구분	학과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교육과정	작업치료학과	16	16	27	75
교직과정	유아교육과	22	22	27	66
교육과정	간호학과	22	37	36	75
특성화 학과	솔브릿지경영학부	별도로 정함			

<표 3. 필수학점 별도 적용 대상자>

구분	학과/과정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별도적용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선발자	일반학과와 동일		★를 참조하여 소속학과 학점 기준에 따름	
	교직(22학점)이수자	22	22	소속학과 기준에 따름	
	복수학위자	비 대상			
	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별도 기준 적용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0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단,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위 ‘별도 적용자’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7.08.28.)

2.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입학자 적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표

<표 1. 일반학과>

구분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신입학 일반학과		25→22	37	33→30	63
편입학	3학년 편입	-	-	6	42
	4학년 편입	-	-	-	21

※단,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이전 4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29조1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 2.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적용자>

구분	학과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작업치료학과	19→16	19→16	일반학과와 동일	
	사회복지·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일반학과와 동일		27	63
	간호학과	일반학과와 동일		42	68
	솔브릿지경영학부	별도로 정함			

<표 3. 필수학점 별도 적용 대상자>

구분	학과/과정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별도적용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선발자	일반학과와 동일		★를 참조하여 소속학과 학점 기준에 따름	
	교직(22학점)이수자	25→22	25→22	소속학과 기준에 따름	
	복수학위자	비 대상			
	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별도 기준 적용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단,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위 '별도 적용자'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7.08.28.)

3. 2015학년도 입학자 적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표

가.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 (개정 2015.03.02.)

<표 1. 일반학과>

구분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신입학 일반학과	32→26	32	33→30	63
편입학 전체	-	-	6	42

<표 2.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 적용자>

구분	학과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물리치료학과	32→26	32→26	33→30	63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스포츠재활학부(건강관리전공)	23	23	33→30	63
	사회복지·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32→26	32→26	27	63
	간호학과	32→26	32→26	42	68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코스,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표 3. 필수학점 별도 적용 대상자>(개정 2017.08.28.)

구분	학과/과정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별도 적용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선발자	31→26	31→26	‘★’참조	63
	교직(22학점)이수자	23→22	23→22	소속 학과 기준에 따름	
	복수학위자	비 대상			
	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별도 기준 적용			

나. 졸업시기별 이수학점표(경과조치)

졸업시기	신입학				편입학		
	교필	교양 계	전필	전공 계	교양 계	전필	전공 계
2013. 2월, 8월	20	22	-	42	-	-	35
2014. 2월, 8월	22	26	30	48	-	6	35
2015. 2월	26	30	30	63	-	6	42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단,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위 ‘별도 적용자’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7.08.28.)

4.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표

가.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개정 2012.7.1.)

<표 1. 일반학과>

구분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신입학 일반학과	26	30	33	63
편입학 전체	-	-	6	42

<표 2.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 적용자>

구분	학과	교양		전공	
		필수	계	필수	계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물리치료학과	24	26	일반학과와 동일	
	작업치료학과	18	20		
	글로벌한식조리학과 한식과정	16	18		
	사회복지·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일반학과와 동일		27	63
	간호학과			42	68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코스,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예외 적용자	복수학위자	비 대상			
	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별도 기준 적용			

나. 졸업시기별 이수학점표(경과조치)

졸업시기	신입학				편입학		
	교필	교양 계	전필	전공 계	교양 계	전필	전공 계
2013. 2월, 8월	20	22	-	42	-	-	35
2014. 2월, 8월	22	26	30	48	-	6	35
2015. 2월	26	30	30	63	-	6	42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단,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위 '별도 적용자'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7.08.28.)